〈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별지 서식>

-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등록**하여야 합니다.
- ※ 목차는 가맹본부에 맞게 더 자세하게 나누십시오.
- * 이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특히 대괄호[]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 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 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068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6-07-22]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07-15]

호텔명품

정보공개서

엠에이치디자인그룹(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25.

엠에이치디지(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 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25 (공릉동,2층)

전 화 : 02-458-0888 팩 스 : 02-2201-428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458-088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호텔명	품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25 (공릉동, 2층)				
엠에이치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를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디지(주)	2013.12.19		2014.01.01	김명호	02-	458-0888	02-2201-4289
	법인등록번호	11011	1-5295913	사업자등록변	호	217-	81-4338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서울 노원-	구 동일로 1025 (공	공릉동, 2층)	
(임원)	김명호	호텔명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편)			김명호	02-458-0888	02-2201-428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2 L Ω 0 l			서울 노원-	구 동일로 1025 (공	공릉동, 2층)	
사용인 (임원)	이홍순	호텔명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편)			김명호	02-458-0888	02-2201-4289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호텔명품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호텔명품	
상 호	호텔명품 00점	
상표(서비스표)	호텔명품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920,351	292,486	627,866	367,000	8,847	8,879
2022년	978,020	316,623	661,397	675,000	23,432	33,531
2023년	1,220,218	508,125	712,092	530,000	62,617	50,695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가맹사업시작전으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74 ~1 H	01 =	-1 T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명호	대표	2014.01.01~현재	엠에이치디지(주)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관련임원	이홍순	감사	2014.01.01~현재	엠에이치디지(주)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1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호텔명품**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호텔명품	가맹점영업 목적사용				

당사의 서비스표는 현재 출원 준비 중이므로 등록되기 전까지 당사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п. 가맹본부의 호텔명품 가맹사업 현황

1. 호텔명품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2. 호텔명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엠에이치디지 (주)	호텔명품	김명호	가맹사업 예정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25 (공릉동, 2층)

3. 호텔명품 업종

영업표지	업종				
호텔명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오월강품	숙박업	호텔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호텔명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i>(</i>	2022.12.3	1.	6	2023.12.3	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	-	_	_	-	_	_
서울	_	-	-	-	-	-	-	-	-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	-	_	-	-	_	-	_
인천	_	_	1	-	-	_	-	-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	-	_	_	-	_	_
경기	_	-	-	_	-	-	_	-	_
강원	_	-	-	_	-	-	_	-	_
충북	_	-	-	_	-	-	_	-	_
충남	_	_	-	-	_	-	-	_	-
전북	_	-	_	_	-		_	-	_
전남	_	-	-	_	-	_	-	-	_
경북	_	-	-	-	-	-	-	-	-
경남	_	_	-	_	-	_	_	-	_
제주	-	_	-	_	_	_	_	_	-

5. 바로 전 3년간 호텔명품 가맹점 수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	-	-
2022	_	_	_	-	-	-
2023	_	_	_	_	-	_

6. 호텔명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사정기준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호텔명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금 및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예치할 가맹금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및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예치할 가맹금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호텔명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해당없음	예치하지 않음	
보증금	해당없음	예치하지 않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최초가맹금은 없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급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86,000				
인테리어	가맹본부	220,000	2,200	계약체결시40% 목공사 완료시점 40% 공사완료시 20%	공사전 계약취소	330㎡ (100평)
간판	가맹본부	22,000	220	계약체결시 50% 공사완료시 50%	공사 전 계약취소	330㎡ (100평)
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33,000	330	설치, 입고 3일 전	설치,입고 전 계약취소	330㎡ (100평)
초도상품비	가맹본부	11,000	110	물품 공급 3일 이전	물품 미공급시	330㎡ (100평)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11만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3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시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호텔명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8~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분담금		광고시행 전	시행 후 광고비로 소요	전국 광고비 총가맹점주 50%분담금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개별청구	판촉시행 전	판촉 후 판촉비로 소요	협의처리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금액		교육시행 전	시행 후 교육비로 소요	보수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9쪽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규모는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없음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필요시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호텔명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확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잔여 채무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때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금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및 가맹본부의 모든 영업비밀 관련 자료나 매뉴얼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귀하가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등을 지체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철거, 반 한 및 원상회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호텔명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호텔명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호텔명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

를 받지 않습니다.

2) 당사는 **호텔명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숙박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rlal 코크프모	공급 및 판매할 수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타 가맹사업자	당사 공급품목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글인 합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모텔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호텔명품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읍/면/동)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호텔명품'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호텔명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3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1항
○ 호텔명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 1항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제2항 및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제18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상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책임과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시설의 교체 ·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23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 등의 대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25조
○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7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제3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제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4조제2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제34조제2항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	
	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34조제2항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제34조제2항
	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	제34호제2영
	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	
	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	, mo 4 — , mo 51
	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	제34조제2항
	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4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제34조제2항
	리기 어려운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4조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검 토(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458-088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 신 청 →당사검토(상속인 면 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승 인시 경영	교육수료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호텔명품**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 상대의 모델 전문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 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458-088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호텔명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제한없음	문의: 가맹본부 02-458-08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가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호텔명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라그 서거	부담	비율	ㅂ다 저구	HJ ¬	
一个正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 75%	광고비 25%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제시(명세서)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 계획 공고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판촉 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대 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 3)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7일 내외	[11p~12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_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 71501 111 Thi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o점포의 시설, 장비,	o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o가맹점사업자의	o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에서 공 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장바잡임 교체	않는 점환경)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인정되는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없는 사유로 계약이	
o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 축공 사에	o점포의 확장 또는	수았셔봶	종료(계약의 해자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는 얼마 내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영양도 포함되는	
7빵업이 횡생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기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유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추가 광를 실기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하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의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화급기능	_ , , ,	
			<분화급시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 부 02-458- 088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세(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 가맹본 부 02-458- 0888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호텔명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호텔명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호텔명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	없음	최초 개점 전 이수
보수 교육	추후공지	협의금액	필요시 실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 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458-08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